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41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김예지 · 강득구 · 김대식
용혜인 · 조경태 · 박덕흠
김상훈 · 김형동 · 백종현
서범수 · 유용원 · 최형두
권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한,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한편,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수급자가 받을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장기관은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를 “분기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압류금지)”를 “(압류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압류”를 “압류하거나 상계”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2.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3. 그 밖에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
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확인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잉지급분이 발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